全景的出对

'19.12.02.(월) 14:00 제377회 정 례 회

#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충 청 북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 Ⅰ.심사경과
- Ⅱ. 제안설명 요지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 1. 추경예산 개요
  - 2. 추경예산 주요내용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4. 채무부담행위액조서
  - 5. 계속비 사업조서
  - 6.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 7. 지방교육채 조서
- Ⅳ.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 ∨. 기금운용계획안
- VI.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Ⅶ. 심사결과
- Ⅷ. 소수의견 요지
- IX. 기타 필요한 사항

####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9. 10. 31.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3. 회부일자 : 2019. 11. 28.

4. 상정일자 : 2019. 11. 28.

-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및 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기획국장 민경찬)

-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85억원 대비 1.8%인 549억원이 증액된 3조 1,334 억원으로 편성함.
- O 금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정지정 사업비를 반영하고,
- O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인상분과 다음연도 명시 이월 대상 사업과,
- O 집행잔액 및 불용률이 높은 사업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 1. 추경예산 개요

#### 가.편성배경

- O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를 반영하고
- O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인상분과 다음연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과
- 집행잔액 및 불용률이 높은 사업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 나. 추경예산안 총규모

-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1,306억원으로,
- 기정예산 3조 785억원 대비 521억원(1.7%)이 증가하였음.

#### ◈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 ◈

(단위: 억원, %)

구 분	기정예산(A)	제3회 추경안(B)	추경증감		
ी स	기정예산(A)	제3의 구경한(D)	금액(B-A)	비율	
총규모	30,785	31,306	521	1.7	

※ 기정예산 = 본예산 26,903억원 + 제1회 추경 2,672억원 + 제2회 추경 1,210억원

## 2.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

## 가. 세입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조 785억원 대비 521**억원(1.7%)이 중액된 3조 1,306억원**으로
- 이전수입은 332억원(1.1%)이 증액된 2조 9,475억원이며,
- 자체수입은 189**억원(48.7%)**이 증액된 **577억원임**.

#### ≪ 세입예산 총괄표 ≫

(단위: 억원, %)

	과 목	기정역	계산	제3회 추경예산안		중감	중감액	
장	관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중감률	
	합 계	30,785	100	31,306	100	521	1.7	
	소 계	29,143	94.7	29,475	94.2	332	1.1	
이전	중앙정부이전수입	25,680	83.4	25,984	83.0	304	1.2	
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450	11.2	3,450	11.0	0	0.0	
	기 타 이 전 수 입	13	0.0	41	0.1	28	순증	
	소 계	388	1.3	577	1.8	189	48.7	
	교수-활동수입	261	0.8	261	0.8	0	0.0	
ત્રી સૌ	행 정 활 동 수 입	12	0.0	11	0.0	△ 1	△ 8.3	
자체 수입	자 산 수 입	35	0.1	147	0.5	112	순증	
, .	이 자 수 입	45	0.1	62	0.2	17	37.8	
	금 융 자 산 회 수	2	0.0	42	0.1	40	순증	
	기 타 수 입	33	0.1	54	0.2	21	63.6	
기타	소 계	1,254	4.1	1,254	4.0	0	0.0	
	전 년 도 이 월 금	1,254	4.1	1,254	4.0	0	0.0	

#### 나. 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조 785억원 대비 521억원(1.7%)이 중액된 3조 1.306억원임.

#### 1) 정책사업별

- 정책사업별 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549억원(△1.8%)이 감액된 **2조 6,976억원**,
  - 평생·직업교육은 1억원(0.0.%)이 감액된 **45억원**,
  - 교육일반은 1,071억원(3.5%)이 증액된 **4,284억원임**

#### ≪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 ≫

(단위: 억원, %)

부문・정	책사업명	기정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		중감액	
, _ ,	IE OTTEO		구성비	(B)	구성비	(C=B-A)	중감률
 합	계	30,785*	100	31,306	100	521**	1.7
유아및초	중등교육	27,525	89.4	26,976	86.2	△ 549	△2.0
평 생 · 조	집 교 육	46	0.2	45	0.1	△ 1	△2.2
교 육	일 반	3,213	10.4	4,285	13.7	1,072	33.4

※ 기정예산 \*소계는 30,784, 증감액 \*\*소계는 522이지만 단위차이에 따른 오차임

#### 2) 성질별

- O 성질별 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343억원(△3.1%)이 감액된 **1조 770억원**,
  - 물건비는 11억원(△0.6%)이 감액된 **1,684억원**,
  - **이전지출**은 66억원(△2.2%)이 감액된 **2,962억원**,
  - 자산취득은 1,439억원(36.6%)이 증액된 5,368억원,
  - **상환지출**은 49억원(△0.6%)이 감액된 **1,818억원**,
  - 전출금등은 431억원(△87.8%)이 감액된 **8,643억원임**.

#### ≪ 성질별 예산편성안 ≫

(단위: 억원, %)

부문・정책사업명		기정역	ll산	제3호 추경예·		증감액			
,		, , ,	<b>.</b>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30,786	100	31,306	100	521	1.7
인	7	<u>닉</u>	刊	11,114	36.1	10,770	34.4	△ 343	△3.1
물	7	<u>닉</u>	刊	1,695	5.5	1,684	5.4	△ 11	△0.6
0]	전	지	출	3,028	9.8	2,962	9.5	△ 66	△2.2
자	산	취	득	3,929	12.8	5,368	17.1	1,439	36.6
상	환	지	출	1,837	6.0	1,819	5.8	△ 18	△1.0
 전	출	급	능	8,692	28.2	8,643	27.6	△ 49	△0.6
예	비 비	및 기	] 타	491	1.6	60	0.2	△ 431	△87.8

## 3) 기관별

- O 기관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본청은 537억원(1.8%)이 증액된 **3조 6억원**,
  - **직속기관**은 19억원(△3.5%)이 감액된 **520억원**,
  - 교육지원청은 3억원(0.4%)이 증액된 **780억원임**.

#### ≪ 기관별 예산편성안 ≫

(단위: 억원, %)

부문・정책사업명	기정역	계산	제3. 추경예	•	중감액	
, = 0 , , H 0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30,785	100	31,306	100	559	1.7
본 청	29,469	95.7	30,006	95.8	537	1.8
직 속 기 관	539	1.8	520	1.7	△ 19	△ 3.5
교 육 지 원 청	777	2.5	780	2.5	3	0.4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 총 괄

- O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사업비,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약에 따른 보수 인상분 반영 및 집행잔액 또는 불용률 과다 사업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사료됨.

#### 나. 예산(안) 규모

○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85억원 대비 521억원이 증액된 3조 1,306억원임

## < 세입 예산(안) >

○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기정예산 2조 5,680억원 대비 304억원 증액된 **2조 5,984억원**,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388억원 대비 189억원이 증액된 **577억원**임.

## ≪ 세입예산 총괄표 ≫

(단위: 억원, %)

	구 분	기정역	계산	제3. 추경예		중감	액
	, –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중감률
	합 계	30,785	100	31,306	100	521	1.7
	소 계	25,680*	83.4	25,984	83.0	304	1.2
중앙	보 통 교 부 금	23,839	77.4	24,118	77.0	279	1.2
정부 이전	특 별 교 부 금	600	1.9	624	2.0	24	4.0
수입	국 고 보 조 금	71	0.2	73	0.2	2	2.8
	특 별 회 계 전 입 금	1,169	3.8	1,169	3.7	0	0.0
	소 계	3,450**	11.2	3,450**	11.0	△ 0.0	0.0
	지방교육세전입금	1,779	5.8	1,779	5.7	0	0.0
지방	시도세전입금	398	1.3	398	1.3	0	0.0
자치 단체	학교용지일반회계분 담금	110	0.4	110	0.4	0	0.0
이전 수입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보 전 금	409	1.3	409	1.3	0	0.0
	교육급여보조금	6	0.0	6	0.0	△ 0.0	0.0
	비법정이전수입	747	2.4	747	2.4	△ 0.0	0.0
7) 1	타 이전수입	13	0	41	0.1	28	순증
자	체 수 입	388	1.3	577	1.8	189	48.7
기타	전년도이월금	1,254	4.1	1,254	4.0	0	0.0

<sup>\*</sup> 소계는 25,679, \*\*소계는 3,449이며, 단위 차이에 따른 오차임

## < 세출 예산(안) >

○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2조 7,525억원 대비 **549억원 감액**,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3,213억원 대비 **1,072억원 증액** 

## ≪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억원, %)

구 분	기정예	산	제3호 추경예4		중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30,785	100	31,306	100	521	1.7
유아및초중등교육	27,525	89.4	26,976	89.4	△ 549	△ 2.0
인 적 자 원 운 용	13,649	44.3	13,250	44.3	△ 399	△ 2.9
교수-학습활동지원	2,328	7.6	2,294	7.6	△ 34	△ 1.5
교육복지지원	3,876	12.6	3,875	12.6	△ 1	0.0
보건/급식/체육활동	384	1.2	386	1.2	2	0.5
학교재정지원관리	3,738	12.1	3,705	12.1	△ 33	△ 0.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550	11.5	3,466	11.5	△ 84	△ 2.4
평생 • 직업교육	46	0.1	45	0.1	△ 1	△ 2.2
평 생 교 육	44	0.1	43	0.1	△ 1	△ 2.3
직 업 교 육	2	0.0	2	0.0	0	0.0
교 육 일 반	3,213	10.4	4,285	10.4	1,072	33.4
교 육 행 정 일 반	483	1.6	2,005	1.6	1,522	순증
기 관 운 영 관 리	365	1.2	364	1.2	△ 1	△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874	6.1	1,856	6.1	△ 18	△ 1.0
예비비및기타	491	1.6	60	1.6	△ 431	△ 87.8

#### 다. 세입예산안 검토

#### 1) 중앙정부 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9년도 기정예산 2조 5,680억원 대비 304억원 (1.2%)이 증액된 2조 5,984억원임

#### ≪ 중앙정부 이전수입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기정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		중감액			
·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소 계				25,680 <sup>*</sup>	100	25,984	100	304	1.2	
보	통	亚	부	叩	23,839	92.8	24,118	92.8	279	1.2
특	별	교	부	그	600	2.3	624	2.4	24	4.0
국	고	보	조	巾	71	0.3	73	0.3	2	2.8
특	별 회	계	전 입	급	1,169	4.6	1,169	4.5	0	0.0

<sup>\*</sup> 소계는 25.679이며, 단위차이에 따른 오차임

-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 2조 3,839억원 대비 279억원 증액된 2조 4,118억원으로 하반기에 교부된 보통교부금을 추경예산에 편성
-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600억원 대비 24억원이 증액된 624억원이며,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1억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73억원임**

#### 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9년도 기정예산 3,450억원 대비 0.4억원 감액된 3,450억원임

####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기정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 –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계	3,450*	100	3,450*	100	△ 0.4	0.0
지 방 교 육 세 전 입 금	1,779	51.6	1,779	51.6	0	0.0
시 도 세 전 입 금	398	11.5	398	11.5	0	0.0
학 교 용 지 일 반 회 계 분 담 금	110	3.2	110	3.2	0	0.0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보 전 금	409	11.9	409	11.9	0	0.0
교육급여보조금	6	0.2	6	0.2	△ 0.4	0.0
비 법 정 이 전 수 입	747	21.7	747	21.7	0	0.0

<sup>\*</sup>합계는 3,449으로 단위차이에 따른 오차임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기정예산 3,450억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다만, 교육급여보조금 0.4억원 감액됨

## 3)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2019년도 기정예산 388억원 대비 189억원이 증액된 577억원으로 48.7% 증가

####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기정역	계산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중감률
<u>합</u> 계	388	100	577	100	189	48.7
교수-학습활동수입	261	67.3	261	45.2	0	0.0
행 정 활 동 수 입	12	3.1	11	1.9	△ 1	△ 8.3
자 산 수 입	35	9.0	147	25.5	112	순증
이 자 수 입	45	11.6	62	10.7	17	37.8
금 융 자 산 회 수	2	0.5	42	7.3	40	순증
기 타 수 입	33	8.5	54	9.4	21	63.6

- O 행정활동수입은 기정예산 12억원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1억원으로 (가칭)창사초부지토지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1억원이 감액되었음
- O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35억원 대비 112억원이 증액된 147억원으로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매각 99억원, 건물매각 12억원 등 112억원 증액되었음
- O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45억원 대비 17억원이 증액된 62억원으로 정기예금이자로 17억원이 증액되었음
- **금융자산회수**는 기정예산 2억원 대비 40억원이 증액된 42억원으로 대여학자금부담금 정산액 40억원이 증액되었음
- O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33억원 대비 21억원이 증액된 54억원으로 감사 결과 회수금 및 소송승소 반환금 21억원이 증액되었음

#### 【검토의견】

- 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예산 편제 미준수
- ○「지방재정법」제41조<sup>1)</sup>,「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2)에 규정에 따르면 세입예산안의 편제는 장·관· 항·목별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그러나,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의 편제는 일부를 생략하고 목별 사업설명서만 제출되었음
-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면 10일 정도의 짧은 시간에 예산안 전체를 파악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 예산편제 기준을 미준수하여 예산안을 제출하면 예산심사를 부실 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으며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감을 주지하고 2020년도 예산안 제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편제를 준수하기 바람.

#### ② 세입예산 산출기초 명확화 필요

-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사업 및 예산규모의 적절성은 고려 해야할 중요사항임. 단가, 물량 등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제출하여야만 예산편성의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세입예산중 특별교부금의 국가시책 사업분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사업을 기준으로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제3회 추경예산안은 13개 분야에만 증감이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6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내용없이 '특별교부금(국가시책) 감교부'로 7.9억원으로 명시하였음, '지역현안특별교부금 감액' 3.6억원도 동일한 사항임.

<sup>1)</sup>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설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sup>2)</sup> 제6조(세입 세출예산의 편제)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5] 와 같다.

#### ≪ 특별교부금 세입 현황 ≫

(단위:백만원)

사업내역	3회 추경예	산
가볍대픽	산출기초	금액
가. 특별교부금		
1) 고교교육력제고	4,501-(기정)2,701	1,800
2) 창의융합교육기반마련및활성화	3,579-(기정)3,377	201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생략)
13) 지방교육행재정운영지원	1,239-(기정)2,372	△1,133
나. 특별교부금(국가시책)감교부	-792	△792
다. 특별교부금(지역현안)		
1) 충북상업정보고다목적교실증축	1,353	1,353
(이하 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10) 해양교육원(제주분원)생활관 증축	526	526
및 기타공사		
11) 지역현안특별교부금감액	-362	△362

-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 및 근거가 없어 소요예산의 적정성과 사업내용을 검토할 수 없음. 2020년도에도 어느 분야에 특별교부금 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 해당부서에조차 알수 없는 등 문제가 있음.
- 또한, 당초 편성된 것보다 교부금이 감액교부되면 3회 추경 세입 예산안처럼 감추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바, 소요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소관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음

#### ③ 특별교부금 분야 교육부 제도 개선 요구 필요

#### ○ 국가시책 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부서명	교부일	사 업 내 역	구분	예산액
1	예 산 과	2019. 9. 4.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계속	50
2		2019.10. 4.	인정도서 개발·보급	신규	16
3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원		13
4	2 - 2 1 -	2019. 2. 8.	학생부 현장실무지원단 연합 정책연수회	계속	40
5	학교혁신과		학생부기재 및 장학역량제고 분담금		15
6		2019. 9. 9.	웹서비스 구축 분담금 ·한글또박또박 고도화 ·한 학기 한 권 읽기	신규	5 60
7		2019. 9. 3.	신규	41	
8	미래인재과	2019. 9.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4세대 나이스응용SW개발	계속	15 973
9		2019. 9. 3	초등학생(영어)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신규	86
10	학교자치과	2019. 9. 3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학교폭력 위기학생 지원)	계속	15
11	교원인사과	2019. 9. 3.	교장자격연수기관 운영평가	계속	1
12	행 정 과	2019. 8.26.	조직분석진단 시도분담금 계속		15
			합 계 (10건)		1,345

- 국가시책 사업은 10개사업 13.4억원이 편성됨. 다만, 학교혁신과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등 3개사업은 2019.2.8.일 교부되어 1회 또는 2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으나,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3) 각 호에 따르면 시책사업의

<sup>3)</sup>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sup>1.</sup>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sup>2.</sup>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경우 매년 1월 31일 한, 지역교육현안수요는 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을 매년 하반기에 교부하고 있어 이월사업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음

- 특별교부금이 상반기에 교부되어 명시이월가능성도 줄이고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 지역교육현안사업

(단위:백만원)

순	지역	교부일	학교/기관명	사업명	총사업비	3추반영
1	청주	19.11. 5.	북일초	소규모옥외체육관 증축	1,168	53
2	청주	19.11. 5.	충북상업정보고	다목적교실 증축	2,717	121
3	충주	19.11. 5.	금가초	다목적교실 증축	2,226	94
4	제천	19.11. 5.	홍광초	다목적교실 증축	2,746	115
5	영동	19.11. 5.	영동초	후관교사 내부보수	1,033	25
6	영동	19.11. 5.	영동고	본관교사 리모델링	3,176	67
7	진천	19.11. 5.	만승초	병설유 교실 증축 및 대수선	1,586	35
8	괴산	19.11. 5.	괴산중	다목적교실 보수	748	19
9	단양	19.11. 5.	한국호텔관광고	본후관 개보수	1,296	30
10	제주	19.11. 5.	해양교육원	생활관 증축 및 기타공사	1,891	42
		18,587	601			

- 지역교육현안은 북일초 소규모옥외체육과 증축 등 10개 시설사업에 총사업비 185억원, 3회 추경에는 6억원이 편성하였음. 본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분야에서 검토하겠음

## 라. 세출예산안 검토 1) 정책사업별 예산

## ≪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기정이	예산	제3 <sup>3</sup> 추경예		중감	액
	· <del>-</del>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30,785	100	31,306	100	521	1.7
유	- 아 및 초 중 등 교 육	27,526	89.4	26,976	86.2	△ 550	△ 2.0
	인 적 자 원 운 용	13,649	44.3	13,250	42.3	△ 399	△ 2.9
	교수-학습활동지원	2,328	7.6	2,294	7.3	△ 34	△ 1.5
	교 육 복 지 지 원	3,876	12.6	3,875	12.4	△ 1	△ 0.0
	보건/급식/체육활동	384	1.2	386	1.2	2	0.5
	학교재정지원관리	3,738	12.1	3,705	11.8	△ 33	△ 0.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551	11.5	3,466	11.1	△ 85	△ 2.4
78	] 생 · 직 업 교 육	46	0.1	45	0.1	Δ1	△ 2.2
	평 생 교 육	44	0.1	43	0.1	△ 1	△ 2.3
	직 업 교 육	2	0.0	2	0.0	0	0.0
11/	유 일 반	3,213	10.4	4,285	13.7	1,072	33.4
	교 육 행 정 일 반	483	1.6	2,006	6.4	1,523	순증
	기 관 운 영 관 리	365	1.2	363	1.2	△ 2	△ 0.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874	6.1	1,856	5.9	△ 18	△ 1.0
	예비비및기타	491	1.6	60	0.2	△ 431	△ 87.8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2조 7,526억원 대비 550억원(2.0%)이 감액된 2조 6,976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 인적자원운용 399억원(2.9%), 교수-학습활동지원 34억원(1.5%), 교육복지지원 1억원(0.0%), 학교재정지원관리 33억원(0.9%),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85억원(2.4%)이 각각 감액되었음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46억원 대비 1억원(2.2%)이 감액된 45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1억원이 감액되었음
-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3,213억원 대비 1,072억원(33.4%)이 증액된 4,285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교육행정일반 1,523억원(315.3%)이 증액되었고,
  - 기관운영관리 2억원(0.5%),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8억원(1.0%), 예비비및기타 431억원(87.8%)이 각각 감액되었음

## 2) 성질별 예산

## ≪ 성질별 예산편성안 ≫

(단위: 억원, %)

Ĵ	쿠문・정책사업	몃	기정이	ll산	제33 추경예	회 산안	증감	액
	1 E 0 -1 1 E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중감률
	합 계		30,785	100	49,857	100	521	1.7
인	건	비	11,114	36.1	10,770	34.4	△ 343	△ 3.1
물	· 건	비	1,695	5.5	1,684	5.4	△ 11	△ 0.6
	운 영	비	1,145	3.7	1,138	3.6	△ 8	△ 0.7
	여	비	77	0.3	77	0.2	0	0.0
	업 무 추 진	비	22	0.1	22	0.1	0	0.0
	복 리 후 생	비	336	1.1	327	1.0	△ 9	△ 2.7
	직무수행경	月月	99	0.3	105	0.3	6	6.1
	연 구 개 발	비	13	0.0	13	0.0	0	0.0
	경상교육지원사	업비	0	0.0	0	0.0	0	0.0
(ه	전 지	출	3,028	9.8	2,962	9.5	△ 67	△ 2.2
	보 전	그	65	0.2	6,3	0.2	$\triangle$ 2	△ 3.1
	민 간 이	전	2,122	6.9	2,057	6.6	△ 65	△ 3.1
	자치단체 ㅇ	] 전	841	2.7	841	2.7	0	0.0
자	· 산 취	득	3,929	12.8	5,368	17.1	1,439	36.6
	토지매입	비	110	0.4	95	0.3	△ 15	△ 13.6
	건 설	비	3,627	11.8	3,465	11.4	△ 62	△ 1.7
	유 형 자	산	169	0.6	158	0.5	△ 12	△ 7.1
	무 형 자	산	22	0.1	20	0.1	△ 2	△ 9.1
	기 금 적	립	0	0.0	1,530	4.9	1,530	0.0
	투자교육지원사	업비	0	0.0	0	0.0	0	0.0
상 _	· 환 지	출	1,837	6.0	1,816	5.8	△ 18	△ 1.0
 전	출 금	둥	8,692	28.2	8,643	27.6	△ 48	△ 0.6
_	전 출 금	등	36	0.1	35	0.1	0	0.0
	학교회계전	출금	8,656	28.1	8,608	27.5	△ 48	△ 0.6
예 	비비및기	타	491	1.6	60	0.2	△ 431	△ 87.8

- **인건비**는 기정예산 1조 1,114억원 대비 343억원(3.1%)이 감액된 1조 770억원으로 전체세출의 34.4%를 차지하고 있음
- **물건비**는 기정예산 1,695억원 대비 11억원(0.6%)이 감액된 1,684억원 으로 전체세출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 운영비 8억원(0.7%)이,
  - 복리후생비 9억원(2.7%)이 각각 감액되었음
- 이전지출은 기정예산 3,028억원 대비 67억원(2.2%)이 감액된 2,962 억원으로 전체세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 보전금 2억원(3.1%)이,
  - 민간이전 65억원(3.1%)이 각각 감액되었음
- **자산취득**은 기정예산 3,929억원 대비 1,439억원(36.6%)이 증액된 5,368억원으로 전체세출의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기금적립으로 1,530억원(순증)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 토지매입비 15억원(13.6%)이
  - 건설비 62억원(1.7%)이
  - 유형자산 12억원(7.1%)이
  - 무형자산 2억원(9.1%) 등 91억원이 감액되었음
- **상환지출**은 기정예산 1,837억원 대비 18억원(1.0%)이 감액된 1,819억원 으로 전체세출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 **전출금등**은 기정예산 8,692억원 대비 48억원(0.6%)이 감액된 8,643억원 으로 전체세출의 27.6%를 차지하고 있음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 491억원 대비 431억원(87.8%)이 감액된 60억원으로 전체세출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3) 기관별 예산

#### ○ 본청

(단위: 억원, %)

	부 서 명	기정역	계산	제3. 추경예	회 산안	중감액	
	1 1 0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 계	29,469	100	30,006	100	537	1.8
공	보 관	23	0.1	23	0.1	0	0.0
감	사 관	4	0.0	4	0.0	0	0.0
ارح	정책기획과	1	0.0	1	0.0	0	0.0
기 히	예 산 과	307	1.0	1,572	5.2	1,265	순증
획 국	체육건강안전과	182	0.6	186	0.6	4	2.2
4	노사협력과	95	0.3	125	0.4	30	31.6
	학교혁신과	175	0.6	175	0.6	△ 0	△ 0.0
교。	미래인재과	109	0.4	120	0.4	11	10.1
육 국	학교자치과	34	0.1	68	0.2	34	100
4	교 원 인 사 과	15	0.1	15	0.0	0	0.0
)ì	총 무 과	2,002	6.8	1,935	6.4	△ 67	△ 3.3
행 고	행 정 과	2,214	7.5	2,164	7.2	△ 50	△ 2.3
정 그	재 무 과	1,718	5.8	1,693	5.6	△ 25	△ 1.5
국	시 설 과	3,176	10.8	3,102	10.3	△ 74	△ 2.3
	기 획 관	13,022	44.2	12,493	41.6	△ 529	△ 4.1
	유초등교육과	232	0.8	221	0.7	△ 11	△ 4.7
구	중등교육과	517	1.8	510	1.7	△ 7	△ 1.4
부	진로직업특수교육과	459	1.6	454	1.5	△ 5	△ 1.1
서	과학국제문화과	478	1.6	467	1.6	△ 11	△ 2.3
	체육보건안전과	490	1.7	489	1.6	△ 1	△ 0.2
	교육복지과	4,216	14.3	4,189	14.0	△ 27	△ 0.6

- 본청예산은 기정예산 2조 9,469억원 대비 537억원(1.8%)이 증가된 3조 6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95.7%를 차지하며, 주요 변동내역은 예산과의 기금전출, 인건비 증액편성, 구)기획관의 예비비 감액 등임

#### O 직속기관

(단위: 백만원, %)

 구 분	기정예	산	제2회 추경여	계산안	증감액	
T 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소 계	53,959	100	52,011	100	△ 1,948	△ 3.6
자 연 과 학 교 육 원	8,885	16.5	7,713	14.8	△ 1,172	△ 13.2
단재교육연수원	4,318	8.0	4,318	8.3	0	0.0
교 육 도 서 관	2,721	5.0	2,721	5.2	0	0.0
교 육 문 화 원	4,304	8.0	4,304	8.3	0	0.0
학 생 수 련 원	2,432	4.5	2,432	4.7	0	0.0
국 제 교 육 원	4,342	8.0	4,342	8.3	0	0.0
교 육 연 구 정 보 원	7,237	13.4	7,237	13.9	0	0.0
중원교육문화원	2,610	4.8	2,610	5.0	0	0.0
유 아 교 육 진 흥 원	1,291	2.4	1,291	2.5	0	0.0
해 양 교 육 원	1,885	3.5	1,829	3.5	△ 56	△ 3.0
진 로 교 육 원	3,329	6.2	3,136	6.0	△ 193	△ 5.8
특 수 교 육 원	10,605	19.7	10,078	19.4	△ 527	△ 5.0

- (직속기관예산은 기정예산 539억 5,900만원 대비 19억 4,800만원 3.6%)이 감액된 520억 1,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1.8%를 차지하며, 주요 감액내역은
- 자연과학연구원의 과학전시관 현대화사업 전시물 제작 설치비 감액 및 괴학전시관 현대화사업에 따른 천체투영실 미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감액
- 해양교육원의 본원 기간제 근로자 신분변동에 따른 인건비 감액
- 진로교육원의 주중진로체험활동운영비 감액
- 특수교육원의 치료지원서비스 및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 감액

#### O 교육지원청

(단위: 백만원, %)

ㄱ. ㅂ	기정예	산	제3회 추경여	계산안	중감액	
구 분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소 계	77,682	100	77,988	100	306	0.4
청 주 교 육 지 원 청	23,487	30.2	23,580	30.2	93	0.4
충주교육지원청	10,130	13.0	10,224	13.1	94	0.9
제 천 교 육 지 원 청	8,186	10.5	8,280	10.6	94	1.1
보은교육지원청	2,340	3.0	2,325	3.0	△ 15	△ 0.6
옥 천 교 육 지 원 청	4,242	5.5	4,242	5.4	0	0.0
영 동 교 육 지 원 청	5,321	6.8	5,414	6.9	93	1.7
진 천 교 육 지 원 청	6,121	7.9	6,156	7.9	35	0.6
괴산증평교육지원청	3,539	4.6	3,559	4.6	20	0.6
음성교육지원청	5,396	6.9	5,387	6.9	△ 9	△ 0.2
단 양 교 육 지 원 청	8,920	11.5	8,821	11.3	△ 99	△ 1.1

- 교육지원청 예산은 기정예산 776억 8,200만원 대비 3억 600만원 (0.4%)이 증액된 779억 8,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2.5%를 차지하며, 주요 증감액 내역은
- 청주교육지원청 등 다목적교실증개축사업 신규편성,
- 보은교육지원청 운영비재정결함보조 감액,
- 단양교육지원청 공유재산 시설비 낙찰차액 감액 등

#### 【 검토의견】

#### 1 감액사업 과다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 감액사업은 59건, 1,106억원임4 이는 2018년도 3회 추경 30건, 417억원, 2017년도 4회 추경 21건, 372억원을 감안할 때 감액규모가 매우 큰 편임. 이는 교육안정화 기금5)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할 경우에도 매우 큰 규모임
-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과도하게 편성한 반증으로 볼 수 있음. 202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예산 검토의견 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산출근거,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년도 집행액 및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감액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②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에 따른 세입, 세출 및 계속비 조서 예산액 조정

-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10개사업을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의 특별교부금의 실 교부액은 54.6억원임.
-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서상 세입은 65억원, 세출은 6억원이고, 계속비 사업조서상 사업비는 81.5억원으로 사업관련 특별교부금 재원의 예산과 계속비조서, 실교부액이 상이함.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되므로 세입, 세출, 계속비 사업액을 실제교부된 금액을 감안하여 조정하여야 함.

<sup>4)</sup> 참고자료 감액사업 현황(36쪽) 참조

<sup>5)</sup> 기금 규모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33쪽) 참조

○ 또한,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예산부서는 특별교부금만 한정하지 말고 이전수입 전반에 대하여 내시공문이나 교부통지 공문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안에 반영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임

####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현황 ◈

(단위: 천원)

순	지역	교부일	사업명	세입6)	세출 <sup>7)</sup>	계속비 조서 <sup>8)</sup>	실 교부액)
1	청주	19.11.5.	북일초 소규모옥외체육관 증축	199,000	53,800	250,000	250,000
2	청주	19.11.5.	충북상업정보고 다목적교실 증축	1,353,000	121,552	1,697,000	754,000 (1,508,000)
3	충주	19.11.5.	금가초 다목적교실 증축	1,117,000	94,600	1,400,000	700,000 (1,400,000)
4	제천	19.11.5.	홍광초 다목적교실 증축	1,353,000	115,000	1,697,000	772,000 (1,544,000)
5	영동	19.11.5.	영동초 후관교사 내부보수	308,000	25,200	386,000	386,000
6	영동	19.11.5.	영동고 본관교사 리모델링	563,000	67,900	706,000	706,000
7	진천	19.11.5.	만승호 병화 교실 증축 및 대수선	542,000	35,500	680,000	635,000
8	괴산	19.11.5.	괴산중 다목적교실 보수	164,000	19,800	206,000	206,000
9	단양	19.11.5.	한국호텔관광고 본후관 개보수	375,000	30,500	470,000	470,000
10	제주	19.11.5.	해외원생활관중축및기타공사	526,000	42,700	660,000	567,066
		힙	계 (10건)	6,500,000	606,552	8,152,000	5,446,066

※ ( )는 총 교부액으로 2020년도에 교부예정임

<sup>6)</sup> 예산안 30쪽~31쪽

<sup>7)</sup> 사업설명자료 363쪽~372쪽

<sup>8)</sup> 예산안 계속비조서 407쪽

<sup>9)</sup>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773(2019.11.5.) 2019년도 제5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충북) 공 문 붙임서류 참조

## 4.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 해당없음

## 5. 계속비 사업조서

○ 계속비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해양교육원(제주분원) 생활관 중축 및 기타공사 등 10건, 총사업비 185.8억원, 당해연도 60억원, 2년차 사업비 179.7억원을 편성하였음.

#### ◈ 계속비사업 조서 ◈

(단위 : 백만원)

여	Halin	الم الم	사업비		계획액		비
연 번	부서별	사 업 명	총액	2019	2020	2021 이후	고
	소 계	10건		601	17,979		
1	체육건강안전과	해양교육원(제주분원)생활관 증축 및 기타공사	1,891	42	1,848	0	
2	청주교육지원청	북일초 소규모옥외체육관 증축	1,168	53	1,114	0	
3	청주교육지원청	충북상업정보고 다목적교실 증축	2,717	121	2,596	0	
4	충주교육지원청	금가초 다목적교실 증축	2,226	94	2,131	0	
5	제천교육지원청	홍광초 다목적교실 증축	2,746	115	2,631	0	
6	영동교육지원청	영동초후관교사 내부 보수공사	1,033	25	1,007	0	
7	영동교육지원청	영동고 본관교사 리모델링	3,176	67	3,108	0	
8	진천교육지원청	만승초병설유치원 유희실 증축 및 대수선	1,586	35	1,551	0	
9	अर्टिकाक् <u>र</u> िक	괴산중 다목적교실 보수	748	19	728	0	
10	단양교육지원청	한국호텔관광고 본관 및 후관 보수	1,296	30	1,265	0	

#### 【 검토의견】

- ① 학생수 감소 감안 시설규모 축소 필요
- O 충북교육청 체육시설 설치 유형별 기준10)에 따라 학생수를 감안해서 다목적교실 또는 소규모 옥외체육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임.
- 다만, 대한민국 현재 출생율 0.9%를 감안하면 도내 초,중,고 학생수 감소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규모 축소가 필요함. 따라서, 금가초는 현재 학생수가 100명이 넘어 다목적교실 기준 면적은 충족하지만, 북일초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축소 검토가 필요하며, 충북 상업정보고, 홍광초교 다목적교실 규모에 대하여도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됨

#### ◈ 학교별 현황 및 사업 내역 ◈

(단위 : 명, m², 백만원)

학교명	사업	학생수	규모	본 공사비	비고
북일초	소규모옥외체육관	50	286	1,114	
충북상업정보고	다목적교실	651	967	2,596	
금가초	다목적교실	142	798	2,131	
홍광초	다목적교실	679	967	2,631	

<sup>10)</sup> 다목적교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유형별 기준 면적

유형	면적(m²)	단가(m²당)	비고
다목적교실	800~1,127	1,195천원	학생수 100명 이상
소교모 옥외체육관 (교실 4실 크기)	286	1,195천원	학생수 100명 이하
간이체육실 (교실 2실 크기)	135	223천원	

- ② 시설사업 관련 계속사업비 축소방안 강구 필요
- O 2019년도 계속비 사업은 당초 예산은 20건 1,019억원, 1회 추경 28건, 102억원이 편성되었음.
- O 3회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2019년도 전체 계속비는 58건, 1,128억원, 총사업비는 2,221억원으로 3개년도 기준으로 금액이 과한 편임
- 앞 검토의견에서 밝인 바와 같이 계속비사업의 경우 시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 편성시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 계속비사업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비 , 총액		2017년도			2018년도			계획액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진액	당해 연도	2020 년도	2021 년도	비고
합 계	252,576	539	530	9	29,812	2,332	27,480	112,817	109,188	220	
신규 (10건)	18,591	0	0	0	0	0	0	606	17,985	0	하반기 특교
기존 (19.본) 20건	177,201	539	530	9	29,812	2,332	27,480	101,955	44,895	0	학교 신설 등
기존 (19.1추) 28건	56,784	0	0	0	0	0	0	10,256	46,308	220	지역 단위 시설 등

## 6.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

○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3조 1,306억원 중 사업의 성질상 연도 내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지출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시업<sup>11</sup>)은 '원평중 역도장 증축 46억원 등 총 775건, 1,564억원으로 최종예산액 기준으로 전체 5.0%에 해당됨

#### 【 검토의견】

○ 충청북도교육청의 최근 명시이월사업비는 2016년도, 2017년도 연속 감소하다가, 2018년 7.4% 증가,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69.4%로 급증하였음.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대상사업수도 386건, 640억원으로 증가되었음.

#### ◈ 최근 4년간 명시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최종예산액	3,130,651	2,830,592	2,628,655	2,285,845
명시이월액 (이월비율)	156,405 (5.00)	92,334 (3.26)	85,947 (3.27)	87,592 (3.83)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64,071 (69.39)	6,387 (7.43)	△ 1,645 (△ 1.88)	△77,698 (△47.01)
대상사업수	775	389	269	268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12)에 근거조항이 있는 제도임. 그렇지만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면 명시이월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sup>11)</sup>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추가경정예산안 327쪽 참조

<sup>12)</sup>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특히 2019년도 예산 편성액중 전액 명시이월사업은 274개사업, 383억원임. 이는 2019년 최종예산액명시이월사업 전체 대비 사업 건수 70.8%, 명시이월액 기준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액 명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O 2020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사업주관부서는 명시이월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경우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실제 이월에 필요한 소요 예산에 국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1회 추경 예산이 전체 이월사업 건수기준 74.8%, 예산액 기준 51.0%에 해당되므로, 금회 1회 추경일정이 예년에 비해 늦은 점(3)을 감안할 때 2회 추경예산 검토보고서에도 명시(4)한 바와 같이

≪전국 시도 교육청 이월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 산 현 액	548,034	574,487	603,988	620,220	656,972	721,645
이 월 액	22,760	25,705	23,300	37,330	39,001	46,056
(예산현액대비)	4.3	4.5	3.9	6.0	5.9	6.4
시설액 이월액	22,941	24,481	20,056	35,396	37,641	44,384
(이월액 대비)	96.6	95.2	86.1	94.8	96.5	96.4

<sup>\*</sup>출처: 2019 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시도 협조사항(p 57)

<sup>13) 2017</sup>년 1회 추경 제출일 2017.01.07.. 2018년 1회 추경 제출일 2018.03.14임

<sup>14)</sup> 세출예산 검토의견 7 사업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

<sup>○</sup>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사업의 경우 이월율이 높고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결산심사시 매년마다 주요지적사항에 해당됨,

<sup>○</sup> 금회 2회 추경예산안에 시설사업비를 중액 편성한 것은 명시이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O 예산부서는 2020년부터는 가급적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하반기에는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반기에만 시설비를 편성 하고, 예산편성시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통해 명시이월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 예산 편성액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건 수		이 월 액		예산 의결후	비고
	(A)	구성비	(B)	구성비	통지일자	,
<u>합</u> 계	274건	100	38,352	100		
본예산	25건	9.1	4,367	11.4	<b>'</b> 18.12.14.	
1회 추경	205건	74.8	19,562	51.0	<b>'</b> 19.06.25.	
2회 추경	43건	15.7	14,382	37.5	<b>'</b> 19.09.02.	
3회 추경	1건	0.4	40	0.1	<b>'</b> 19.12.02.	

## 7. 지방교육채 조서 : 해당없음

## Ⅳ.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1. 추경예산안 총규모

-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3조 1,334억원으로,
- 기정예산 3조 785억원 대비 549억원이 증가하였음.

#### ◈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 ◈

(단위: 억원, %)

-7 H	기정예산		기정예산			
구 · 분	<u>.</u>	기정예산 . (A)	당초안 (B)	수정예산안 (C)	중감 ((D=C-B)	대비증감 (E=C-A)
총규모	-	30,785	31,306	31,334	28	549

<sup>※</sup> 기정예산 = 본예산 26,903억원 + 제1회 추경 2,672억원 + 제2회 추경 1,210억원

### 2. 수정예산안 주요내용

#### 가. 세입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조 785억원 대비 549억원(1.7%)이 중액된 3조 1,334억원으로
  - 이전수입은 360억원(1.2%)이 증액된 2조 9,503억원이며,
- 자체수입은 189억원(48.7%)이 증액된 577억원임.

## ≪ 세입예산 총괄표 ≫

(단위: 억원, %)

	과 목	기정역	계산	수정예	산안	증감	<u> </u>
장	관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중감률
	합계	30,785	100	31,334	100	549	1.8
	소 계	29,143	94.7	29,503	94.2	360	1.2
이전	중앙정부이전수입	25,680	83.4	26,012	83.0	332	1.3
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450	11.2	3,450	11.0	0	0.0
	기 타 이 전 수 입	13	0.0	41	0.1	28	순증
	소 계	388	1.3	577	1.8	189	48.7
	교수-활동수입	261	0.8	261	0.8	0	0.0
3	행 정 활 동 수 입	12	0.0	11	0.0	△ 1	△ 8.3
자체 수입	자 산 수 입	35	0.1	147	0.5	112	순증
, 4	이 자 수 입	45	0.1	62	0.2	17	37.8
	금 융 자 산 회 수	2	0.0	42	0.1	40	순증
	기 타 수 입	33	0.1	54	0.2	21	63.6
기타	소 계	1,254	4.1	1,254	4.0	0	0.0
714 	전 년 도 이 월 금	1,254	4.1	1,254	4.0	0	0.0

## 나. 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조 785억원 대비 549억원(1.8%)이 중액된 3조 1,334억원임.

## 1) 정책사업별

- 정책사업별 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521억원(△1.9%)이 감액된 **2조 7,004억원,**
  - 평생·직업교육은 1억원(0.0.%)이 감액된 **45억원**,
  - 교육일반은 1,071억원(3.5%)이 증액된 **4,284억원임**

#### ≪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 ≫

(단위: 억원, %)

부문・정책사업명	기정여	계산 수정예산안		증감	증감액	
TT: 7847711178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u></u> 합계	30,785*	100	31,334	100	549**	1.8
유아및초중등교육	27,525	89.4	27,004	86.2	△ 521	△1.9
평생 · 직업교육	46	0.2	45	0.1	△ 1	△2.2
교 육 일 반	3,213	10.4	4,285	13.7	1,072	33.4

※ 기정예산 \*합계는 30,784, 증감액 \*\*합계는 548이지만 단위차이에 따른 오차임

#### 2) 성질별

- O 성질별 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343억원(△3.1%)이 감액된 **1조 771억원**,
  - 물건비는 11억원(△0.6%)이 감액된 **1,684억원**,
  - **이전지출**은 39억원(△2.2%)이 감액된 **2,962억원**,
  - 자산취득은 1,439억원(36.6%)이 증액된 5,368억원,
  - **상환지출**은 18억원(△0.6%)이 감액된 **1,818억원**,
  - 전출금등은 49억원(△0.6%)이 감액된 **8,643억원임**,
  - 예비비및기타는 431억원(△87.8%)이 감액된 **60억원임**.

#### ≪ 성질별 예산편성안 ≫

(단위: 억원, %)

ㅂ	부문・정책사업명		기정역	ll산	수정예	산안	증감액		
一 丁·			i 7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중감률
	합	계		30,786	100	31,334	100	549*	1.8
인	7	1	비	11,114	36.1	10,771	34.4	△ 343	△3.1
물	7	1	비	1,695	5.5	1,684	5.4	△ 11	△0.6
0]	전	지	출	3,028	9.8	2,989	9.5	△ 39	△1.3
자	산	취	득	3,929	12.8	5,368	17.1	1,439	36.6
상	환	지	출	1,837	6.0	1,819	5.8	△ 18	△1.0
 전	출	그	냰	8,692	28.2	8,643	27.6	△ 49	△0.6
예	비 비	및 기	타	491	1.6	60	0.2	△ 431	△87.8

※ 수정예산 \*합계는 548이지만 단위차이에 따른 오차임

## 3) 기관별

- O 기관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본청은 565억원(1.9%)이 증액된 **3조 34억원**,
  - **직속기관**은 19억원(△3.5%)이 감액된 **520억원**,
  - 교육지원청은 3억원(0.4%)이 증액된 **780억원임**.

#### ≪ 기관별 예산편성안 ≫

(단위: 억원, %)

부문ㆍ정책사업명	기정예산		제3. 추경예		증감액	
1 E 0 1 1 H 0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중감률
합 합 계	30,785	100	31,334	100	549	1.8
본 청	29,469	95.7	30,034	95.8	565	1.9
직 속 기 관	539	1.8	520	1.7	△ 19	△ 3.5
교 육 지 원 청	777	2.5	780	2.5	3	0.4

## 3.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액을 확정하여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분 27억 5,3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임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사업비는 2019년 1월에 교부되었으나, 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3회 추경시 감액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	네/관명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역	편성액	감액사유
		교원인건비	봉급,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23,000,000	잔액 감액
		지방공무원인건비	봉급, 육이휴직수당, 명절휴가비 등	△8,200,000	잔액 감액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봉급,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1,440,000	잔액 감액
		계약제교원인건비	인건비(기간제교원)	△472,000	항목 간 조정
	기획관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일반직대체인력인건비	△350,000	잔액 감액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기본운영비	△322,000	잔액 감액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00,000	공·사립학교
		본청운영	여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5,430	정원대비 초과금액 조정
		예비비	일반예비비및목적예비비	△18,665,287	재원조정 감액
구		계약제교원인건비	초등기간제교사맞춤형복지비	△22,350	기간제교원수 감소 (345명→298명) △47
부	유초등 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	△990,013	담임수당, 교원연구비 등 잔액 감액(교원수 감소)
서	, ,		통학차량운영비	△65,000	대상유치원 감소(91→78) △13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	△60,165	잔액 감액(사립초등교원)
		계약제교원인건비	중등기간제교사맞춤형복지비	△28,740	인원 감소(750명→704명) △46
	중 등 교육과	교원인사관리	원격및위탁연수, 위원회참석수당, 교권보호배책임보험	△96,150	잔액 감액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	△593,914	잔액 감액(사립중등교원)
	진로직업 특교육가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맞춤형자유수강권지원	△427,000	신청자 감소
		원네고시말보고사은영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및 초중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550,121	잔액 감액
	과 학 국 제	정보화지원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116,160	신청자 감소 (6,000명→5,450명) △550
	문화과	정보보안관리	사이버침해사고대응시스템구축	△223,602	잔액 감액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148,300	특성화고장하금및인건비진맥김맥

부	<b>네/ I관명</b>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역	편성액	감액사유
 구 부	체 육 보 건	학교폭력예방지원	어울림프로그램운영분담금, 117상담사전문성연수분담금	△83,000	특교분담금 미교부 감액
서	안전과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이버거점Wee센터운영지원	△40,000	특교 미교부 감액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및일용직인건비, 장애인고용부담금	△1,024,323	잔액 감액, 지급사유 미발생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감인건비	△16,962	사감인건비(250일→110일)
		학교보건관리	전문의 임상삼다전문가 전문상당시인건비	△117,197	잔액 감액(마음건강증진센터)
		학생상담활동지원	전문상담사인건비	△179,856	전문상담사기관 후교배치 잔액 감액
	교 육 복지과	저소득충자녀학비지원	공립고, 사립고	△406,430	지원대상자 감소
	7/14	기타교육비지원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비)지원	△80,000	지원대상자 감소
		교육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 교과서)	△361,702	지원대상자 감소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운영지원	△232,200	잔액 감액
		교과서지원	다자녀(셋째이후)및저소득층자녀	△200,000	지원대상자 감소
예	산 과	내부유보금	2019. 1~2추 예산심의삭감분	△27,675,394	재원조정 감액
체육	건강안전과	양성평등및성교육	스쿨미투가해교원재발방지교육	△15,000	지급사유 미발생
上,	사협력과	교원인사관리	교권보호지원센터시설리모델링	△7,472	잔액 감액
학.	교혁신과	진로진학교육	EBSmath사이트운영지원분담금, EBS영어교육방송지원분담금	△219,000	중복편성 감액
		지방공무원인건비	연금부담금	△5,193,970	인건비 감액에 따른 부담금 감액
총	무 과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연금부담금 등)	△1,089,969	인건비 감액에 따른 부담금 감액
υ	1 -1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신규공무원실무수습훈련인건비	△321,861	인원 감소(51명→36명) △15
		본청시설관리	본관외부이중창설치공사	△80,000	낙찰차액 감액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856,200	(가칭)청원2초중 토자공사자가 인하
		기파 난 0 년	학급증설	△837,475	잔액 감액
행	정 과	학생배치계획관리	학생통학지원	△420,785	잔액 감액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및 맞춤형복지비	△2,585,895	잔액 감액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	△272,609	잔액 감액

부세/1관명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역	편성액	감액사유
재 무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은여울중학교풋살경기장및 야외학습장조성부지매입	△669,340	소유자 매도 포기로 인한 감액
	지방교육채상환	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1,816,251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집행진액
	학교신증설	(가칭)동남1초등학교설계비	△874,395	잔액 감액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각급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6,428,753	잔액 감액
시 설 과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진천행복교육지원센터증축 설계비	△23,428	잔액 감액
	직속기관시설관리	3종시설물안전점검용역, 노후시설정밀점검용역	△43,985	잔액 감액
자연과학교육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천체투영실운영, 과학전시관현대화사업	△1,172,000	잔액 감액
해양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해양수련활동인력운영	△56,781	잔액 감액
진로교육원	진로진학교육	주중진로체험활동운영	△192,620	잔액 감액
F & ¬ 0 0	투수교육교수학습지원	시간제치료사및치료바우처운영	△235,143	잔액 감액
특수교육원	특수교육복지지원	맞춤형방과후프로그램운영	△371,346	잔액 감액
청주교육자원청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수업료보전(고교무상교육)	△82,800	잔액 감액(사립고 8교)
মাঠান্দ্ৰসূচিঠ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수영장관리및안전관리요원인건비	△21,140	지급사유 미발생(제천학생회관)
보은교육자원청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수업료보전(고교무상교육)	△19,156	잔액 감액(사립고 1교)
음성교육자원청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수업료보전(고교무상교육)	△9,000	잔액 감액(사립고 1교)
단상교육지원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공동관사(상진리)대수선, 단성지역공동관사신축설계비, 학교공동관사(매포)보수	△141,352	잔액 감액
	합 계(	(59건)	△110,651,022	

## Ⅴ. 기금운용계획안

## 1. 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제14조<sup>15</sup>)「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9. 9. 20.시행)
- O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O 운용계획: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1,53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 이에 따른 이자 수입

#### 2. 기금 운용계획 총괄

(단위: 억원)

	수입	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19년 수입액	'18년 수입액	중감	지출항목	'19년 지출액	'18년 지출액	중감	
합계	1,531		1,531	합계	1,531		1,531	
교특회계 전입금	1,530		1,530	예치금	1,531		1,531	
이자수입	1		1	. , ,	,		ŕ	

<sup>15)</sup>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영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검토의견】

-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규모 축소
  -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sup>16</sup>)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용을 위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함.
  - 3회 추경예산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첨부된 2019~2023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 계획 14쪽 지역통합재정통계 전망과 근거에는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계	16,988,181	3,220,501	3,259,267	3,373,560	3,491,691	3,643,162	3.1
교육비 특별회계	16,443,181	3,120,501	3,153,267	3,261,560	3,378,691	3,529,162	3.1
기금	545,000	100,000	106,000	112,000	113,000	114,000	3.3
출자출연기관	_	-	_	-	-	-	

<sup>16)</sup>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17) 기금의 용도 규정을 보면, 임대형민자사업(BTL)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중축 39개교, 학교 신설, 이전, 중·개축 15교 등 총 54개 임대형민자 사업을 시행하여 적게는 2.8%, 많게는 4.1%에 해당되는 사업수익률을 업체에 20년 상환으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분기별로 상환하고 있음

#### ◈ BTL 사업 상환 내역 ◈

(단위: 12월 말 기준, 천원)

사업명	20년 상환 예정액(a)	2019. 12월까지 기 상환액(b)	상환잔액 (c)	상환 비율(b/c)
산남고 외 2교	55,475,599	35,318,947	20,156,652	64%
성화초 외 2교	51,339,038	31,415,461	19,923,577	61%
서현초 외 6교	68,073,266	39,207,123	28,866,143	58%
청주성신학교 외 16교	58,563,160	34,990,367	23,572,793	60%
직지초 외 11교	59,466,530	32,273,858	27,192,672	54%
서현중 외 11교	61,040,185	34,047,475	26,992,710	56%
합계	353,957,778	207,253,231	146,704,547	59%

<sup>17)</sup> 제4조(기금의 용도)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sup>1.</sup>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sup>2.</sup>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 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sup>3.</sup> 임대형민자사업(BTL)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sup>4.</sup> 노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및 개축, 교육행정기관 신설·이전·증축·개축 등 장기간이 소 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sup>5.</sup>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 O 재정건전성 개선, 향후 안정적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규모를 축소하고, 축소된 금액만큼 BTL지급금 조기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육안정화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중 기금 근거조례 제정은 8곳, 실제 기금이 조성된 자치단체는 2곳임, 향후 조성예정인 자치단체를 감안할 때도 1,530억원은 규모가 큰 편으로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전국 시도별 재정안정화기금 현황 ◈

(단위: 억원)

ан	그으처며	조례제정여부 (시행일자)	예산 규모	지방채 잔액	2019년 기금적립		ш¬
연번	교육청명				기적립액	적립예정액	비고
1	서울	X	93,803	6,158	Χ	X	
2	부산	제정완료 (2019. 5. 22.)	42,108	-	1,500억	2,400억	
3	인천	X	37,888	1,300	Χ	X	
4	대전	제정완료 (2019. 8. 9.)	21,279	-	X	290억(2추) 230(20본)	
5	대구	제정완료 (2019. 10. 10.)	32,628	1,700	Χ	X	
6	광주	X	21,479	577	X	X	
7	울산	X	17,671	760	X	X	
8	세종	제정완료 (2019. 7. 10.)	8,349	600	Χ	1,628억	
9	경기	X	154,177	8,009	X	X	
10	강원	제정완료 (2019. 7. 5.)	30,414	1	X	2,100억	
11	충북	제정완료 (2019. 9. 20.)	26,903	-	Χ	1,530억	
12	충남	X	34,516	720	X	X	
13	경북	제정완료 (2019. 5. 23.)	45,376	ı	1,400억	400억	
14	경남	제정완료 (2019. 9. 26.)	54,267	885	Χ	X	
15	전북	X	24,690	1	X	X	
16	전남	X	38,393	1,890	X	X	
17	제주	X	12,012	1,200	X	X	

Ⅵ. 주요 질의·답변 요지: "생 략"

Ⅷ. 심사결과: "원안의결"

※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의결

Ⅷ. 소수의견 요지: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